

세금 계산서 등 정립 투매없는 유통질서를

全夢甲
장비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육가공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육가공 제품을 공급,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국민건강에 기여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 증진과 정부시책 구현에도 적극 참여하리라 보여지며 우리 주변 경제활동과 가장 밀접한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조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육가공제품의 생산 및 풍급은 원료의 조달에서 소비자 공급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법과 행정 규제의 간섭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원료의 조달에서부터 제조, 생산 유통공급에 이르기 까지 이동상황이 통제되며, 이러한 통제 등으로 각종 조세가 부과되는 기본자료가 발생되는 것이다.

육가공 업체들은 절세에 의한 적정세 부담을 기하지 않으면 더욱 어려움을 겪게된다. 육가공제품의 수입 자유화로 제품의 가격

유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 조세 문제중 현행 내국세 문제 일부를 기술해 보기로 한다.

첫째,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1) 원료의 조달에서 제품의 제조, 생산에 이르기까지는 별로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되나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첫단계, 중간 단계 내지는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세의 전가 문제와 동 세금계산서의 수수 문제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않는 한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2) 제조업자의 이윤과 유통업자의 유통 마진에 대한 조세문제를 다루어 볼 때 유통업자의 적정 이윤은 미지수이나 제조업자의 이윤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다고 보아 제조업자에 대한 부가 가치는 유지되리라 생각되나, 첫 단계 이하 유통업자의 이익률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매출이익율이

불확실하여 부가가치율 저조 등으로 관계기관의 세무 간섭이 유발되며 약간의 상호 반목이 예상된다.

둘째, 법인세 및 소득세 측면에서

1) 요즈음의 세무행정은 법인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자진신고 납세제도로의 이양에 따라 일정 기준을 이상을 신고 납부한 사람은 법인세, 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며 일정 기준을 이하의 신고·납부자는 불성실 신고자라하여 강력하고 심도있는 세무조사를 병행하고 있어 적정한 이윤을 확보한 사람은 별 어려움이 없다하겠으나 그 이윤을 얻지못한 사람은 가혹한 조사로 심히 불이익한 처분을 즉 많은 세금을 내야할 것이며,

2) 위에서 말한 일정 기준이라 함은 동업자의 전국 평균 신고율과 국세청장이 정한 율을 기준으로 하여 성실도를 판정하는 기준을 훈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위에서 말한 몇가지 내용에서 부가가치세의 전가(前轉) 세금계산서의 수수 또는 난매나 투매등이 없는 유통질서의 확립만이 육가공업계의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각자의 조세 부담의 적정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이는 곧 문서와 물증에 의한 모든 거래와 사실의 입증이 절대로 요구되며 이러한 입증방법은 오직 장부에 위한 기장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문의사항은 252-6862 253-5141>